

# 보도자료

(농림부)

- 제공일 : 2006. 2. 10.
- 제공자 : 농림부 소비안전과
- 과 장 : 심 상 안
- 사무관 : 고 경 봉
- 전 화 : 500-1838

이 자료는 2006년 2월 1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GAP 본격추진 - 2월9일, 농관원이 지정신청과 심사 맡아

- 선진 안전성 강화제도인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2.9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 GAP는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GAP가 추진되면 기존의 생산단계에서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 강화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국내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GAP 제도는 친환경인증·품질인증과는 다르게 농가 인증을 민간에서만 할 수 있는 민간인증제도로 운영되므로,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관·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정 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 GAP는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강화 체계를 구축하게 되므로 수확 후 관리단계에서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 대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기타 선별·저장·포장하는 시설로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서 지정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정 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붙임1>

# I.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 관련 법령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7조의4(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2. 동법 시행규칙

○ 제15조의7(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 인증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II.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기준(별표 3의5)

### 1. 조직 및 인력

#### 가. 조직

-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나. 인력

- (1) 인증심사원을 5인 이상(상근 2인 이상) 갖출 것
-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환경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라)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마)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 2. 시 설

-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분석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분석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의 사업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

다.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 교육

바.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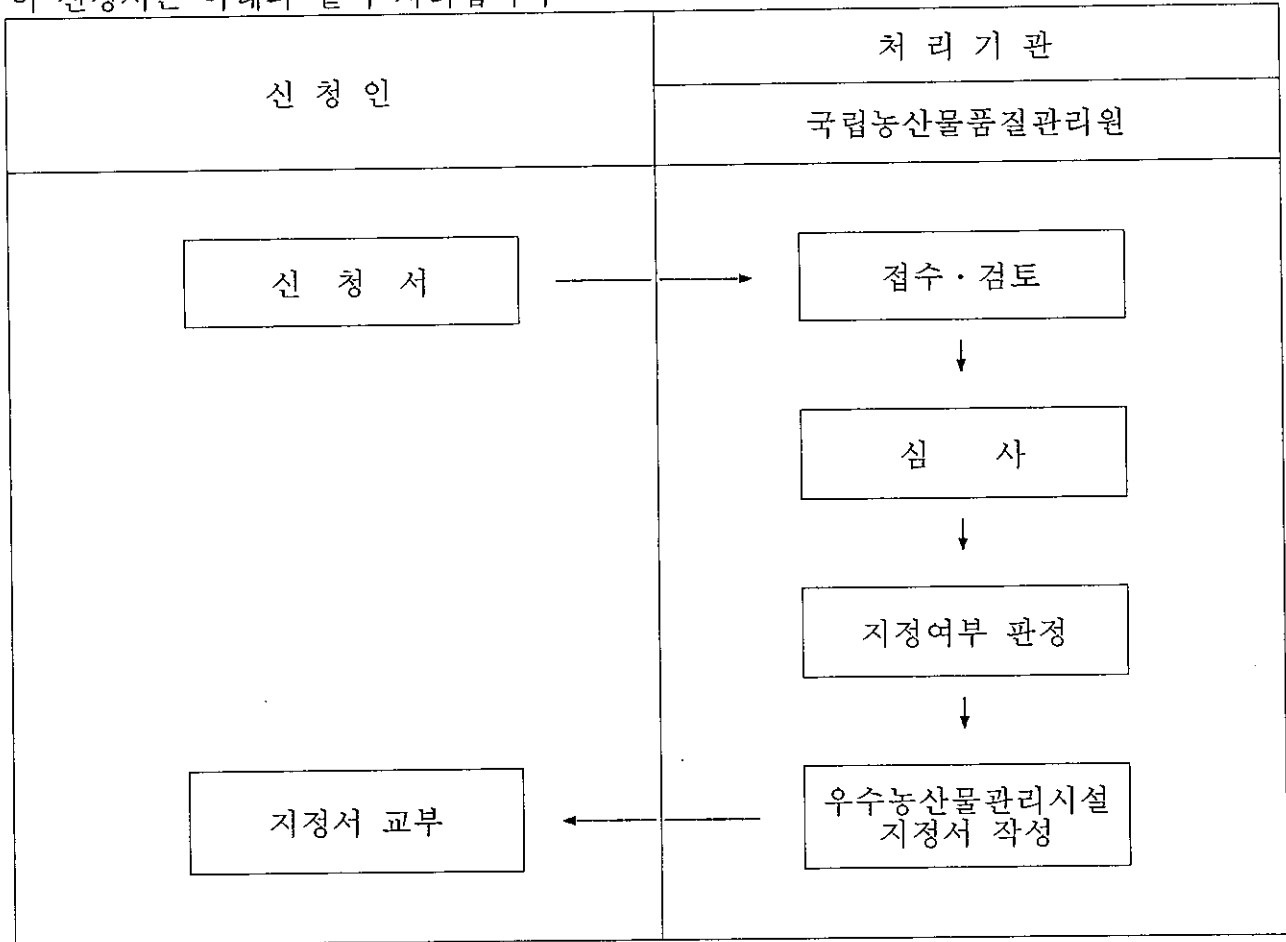
사.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인증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



수 수 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붙임 2>

# I.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관련 법령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7조의3(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⑤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2. 동법 시행규칙

○ 제15조의5(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Ⅱ.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기준(별표 3의3)

###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우수농산물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2인 이상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역할과 자세, 우수농산물 관리관련 법령,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험이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환경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험이 있는 자
- (라)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험이 있는 자
- (마)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 2. 시 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미비한 사항은 1년 이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건축물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선별, 저장시설 등은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1)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X		
	(다) 내벽은 내수성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라) 천정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물이나 먼지가 쌓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은 견고한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작업장의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4)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작업장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X		
수확 후 관리설비	(1)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은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구비·관리되어야 한다.			
	(2) 농산물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없으며 세정 및 소독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X		
	(3) 냉각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	X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4)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수처리시설	(1)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X		
	(2)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X		
	(3)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X		
저장(예냉) 시설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 및 농산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저온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저장(예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벽체 및 천정의 내벽은 내수성 단열 판넬로 마감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기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가 가능한 파레트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온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			
	(4)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수송·운반 설비	(1) 운반차량은 농산물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천막 등의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쉽고 필요시	X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X		
	(3)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X		
위생관리	(1) 화장실은 작업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 세척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용 타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 보관장소를 두어 비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X		
관리유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관리기록대장 등			

###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규정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방법 마련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시설 및 장비 보완 추진

다. 우수농산물의 사후관리

라.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감독

마.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 교육

바.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관리시설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



수 수 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